

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

2006. 7. 24 제정

2007. 5. 16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공학교육혁신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무)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교육환경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(ABEEK)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공과대학의 교육방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,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학교육 관련 학술 연구
2. 공학교육 관련 각종 학술회의 개최
3. 공학교육의 시스템 개발
4. 공학교육방법 개발
5.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 준비
6.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
7.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

제 3 조 (센터장) ①공학교육혁신센터에 센터장을 두되, 센터장은 공과대학장이 겸한다.

②센터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 3 조의 2 (부센터장) ①공학교육혁신센터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②부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(본조신설 2007.5.16)

제 4 조 (조직) ①공학교육혁신센터에 연구기획부, 교육운영부, 행정실을 둔다.

②연구기획부는 공학교육인증 교육에 관한 기획과 프로그램 업무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교육운영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사업을 준비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임무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행정실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, 공과대학 행정실과 통합 운영한다.

제 5 조 (연구원 등)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6 조 (프로그램디렉터) 공과대학 각 전공별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기획,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에 프로그램디렉터를 두며,

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

프로그램디렉터는 공과대학 전공주임교수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센터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 (자문위원회) 공학교육을 위한 학내외 전반 사항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단과대학 학장 또는 학과(전공)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, 외부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9 조 (사업계획 및 예산서) 센터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0 조 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센터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현금 출납)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제 12 조 (운영세칙)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6. 7. 24 제정)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5. 16 개정)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